4.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

□ 사업개요

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

□ 지원대상

- 「여성기업법」제2조*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
 - *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 회사, 개인사업자 또는 협동조합(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「소비자생활협동조 합법」에 따른 조합)

□ 지원내용

○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(온라인)

□ 신청접수

-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에서 신청
 - * 신청 후 2주 안에 발급

□ 사업절차

○ 신청 → 서면 · 현장 심사 → 승인 및 온라인 발급

여성기업 확인신청 (smpp.go.kr)	*	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	•	최종승인 및 확인서 발급	>	결과통보
여성기업		협회, 전문평가위원		지방중소벤처기업청		지방중소벤처기업청

□ **문의처**: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략사업팀 ☎ 02-369-0932/0971